

# 박승수변호사 민사법기록형 실전모의고사 강의계획서

본시험과 같은 유형의 난이도 높은 실전연습과 개별침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합격점수를 확보하는 실전 모의고사!!

강사	변호사 박 승 수	상담연락	pss1359@empas.com / 010-9791-1350
일정	10/26(월)~11/2(월)(월~금), 총6회	강의시간	(오후) (시험) 1:00~4:00 / (강의) 4:20~6:00
교재	▶ 모의고사 문제 + 해설 및 요건사실과 사례풀이구조에 기초한 기록메모방법과 기록풀이구조를 한 장에 축약하여 제공		
문제구성	① 문제구성 : 기록형에서 가장 출제가능한 판례문제들만 선별하여 출제할 예정 - 각 로스쿨 + 사법연수원 + 법전협회의 시험 출제문제들 중 중요문제들 선별출제 ② 강의특징 : 요건사실과 사례풀이구조에 기초한 기록메모방법과 기록풀이구조를 철저히 연습시킴으로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도 풀이할 수 있는 능력함양 - 기록완벽대비		
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합격자만이 제대로 합격 포인트를 잡는다. · 법무법인 네모 대표 등으로 변호사 활동 · 2000년부터 사법시험 · 변리사 상법, 민법 강의 · 2010년부터 변호사 시험 상법, 민법 강의 · 충남대, 경북대, 영남대, 제주대, 중앙대, 서강대, 인하대 등 출강 · 상법과 민법 기본서와 사례집 등 다수 교재 저술 ▶ 위 강의에서 최다 인원 수강		

회차	날짜		시험범위
1회	10/26(월)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2회	10/27(화)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3회	10/28(수)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4회	10/29(목)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5회	10/30(금)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6회	11/2(월)	오후	전범위(민법 + 민소법 + 상법 + 집행법)

※첨부 : 기록형 메모

민사법 기록형 제9회 기출 메모

청구목적물	원고	피고	청구(요건사실 및 사실관계)	예상되는 주장(항변)	반박(재항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강기원 (720429-1248319)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1105 (양재동, 대우빌라트)	1. 최민우 - 서울 남구 강남대로 128, A-1305(역삼동,오션빌) 2. 조현욱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902	가. 가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① 원고와 피고 조현욱의 준소비대차계약체결 ② 부동산 ③ 대물변제 예약 ④ 예약 당시 시가가 차용원리금 초과 ⑤ 소이등 경로  나.소결	1) 피고 조현욱은 2019. 8. 1. 약정서 제3조에 의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됨  2) 피고 최민우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1) 위 약정은 가담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무효  2) 가담법 제11조 단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최민우는 악의의 제3자로서 대항할 수 없음	1.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민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2019. 11. 15. 접수 제7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현욱은 원고로부터 6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지원 2019. 8. 1. 접수 제3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3. 정대호 (750827-1529394)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1, 107-503	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소유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1)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 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대상)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기산점) ③ 일정한 기간 경과 2) 말소등기의 대상과 피고적격 (판) 저당권설정등기 + 양수인	1) 피고 정대호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 -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 - 주장할 것이 예상  2) 원고가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3) 피고 조현욱이 2019. 7. 4. 1억원의 채무를 변제 - 시효이익의 포기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1) (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 - 피담보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2) (판) 제3취득자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음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3) (판)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 -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2. 피고 정대호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2. 5. 접수 제10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1. 최민우 4. 이종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17, 104-904 (이태원동 남산아파트)	가. 피고 조현욱과 피고 최민우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목적물의 인도 나. 원고의 임대인의 지위승계 다. 피고 최민우와 피고 이종문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라. 임대차계약의 종료 마.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1) 피고 이종문은 자신이 연체한 차임은 1기에 불과 -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2) 피고 이종문은 연체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1) 임차인인 피고 최민우가 이미 2기의 차임을 연체 - 적절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 - 전차인이 1기 차임을 연체 - 3기 연체차임 - 원고는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청구도 가능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함 - 따라서 연체차임청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하면 해지가능함	3. 원고에게, 가. 피고 최민우는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에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종문은 피고 최민우가 원고로부터 위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5. 남현수 과천시 별양로 12, 3-602 (별양동, 원문스카이빌)	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나. 제2매매계약의 착오에 기한 취소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있을 것 - 동기의 착오 - 표시됨(판) ②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 주관적 기준 + 객관적 기준 ③ 중과실이 없을 것 다. 원고의 부당이득청구와 말소등기청구의 동시이행 라. 원고의 이자청구	1) 피고 남현수는 원고를 따라서 하남시청도 방문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 - 원고가 허가를 받지 못함에 대해서 귀책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실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1)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음	4. 피고 남현수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8. 2. 15. 접수 제4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대여금 청구		5. 남현수 6. 김상훈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144-B203 (상대원동, 유림빌라)	가. 원고와 소외 남현진의 소비대차계약체결과 5천만 원지급 및 변제기 도래 나. 피고 김상훈의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연대책임 다. 피고 남현수의 병존적 채무인수	1) 피고 김상훈, 남현수는 소외 남현진의 차용에 따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2) 피고 남현수는 자신이 이행최고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1) ① 대여원금채무 = 2014.7.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7.1. 소멸시효 완성 - 소장제출시인 2020.1.10. 현재 소멸시효 완성 안됨 ② 이자채무 = 2014.7.1.부터 3년 소멸시효 걸림 - 2016.5.1. 채무인수로 시효중단됨 - 다시 시효진행됨 - 2019.8.1. 이행최고로 시효중단됨 - 이로부터 3년 내인 2016.8.1.부터 이자채무는 시효소멸되지 않음  2) 소외 남현진과 피고 김상훈, 남현수는 연대채무를 부담함 - 남현진, 피고 김상훈에게 3년 최고 - 이행청구의 절대효 - 피고 남현진에게 최고의 효력 미침	5. 피고 남현수, 김상훈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p>6. 추심금청구</p>		<p>5. 김상훈</p>	<p>가. 추심채권 나. 압류 및 추심명령 다.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p>	<p>1) 피고 김상훈 -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추심명령은 무효 - 신한은행의 채권액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안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 2) 피고 김상훈은 2019. 12. 24. 소외 김현철이 집행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추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p>	<p>1) (판)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어 유효함 -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2) (판)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기한 항변 부정</p>	<p>6. 피고 김상훈은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8.부터 2017. 1. 7.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p>
<p>7.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p>		<p>1. 최민우</p>	<p>가. 피고 최민우의 유치권 존재 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자기의 현재의 권리관계인 법률상 이익에 위험이 현존하고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p>	<p>1) 피고 최민우는 보증금에 기해서 민법상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예상 2) 피고 최민우는 보증금에 기해서 상법상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예상</p>	<p>1) (판)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 - 따라서 민사유치권 성립 부정 2) (판) 상사유치권은 i)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ii) 채무자 소유물건에만 성립함 - 따라서 상사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음</p>	<p>7. 원고와 피고 최민우 사이에서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민우의 소외 박형국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최민우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p>